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엄샛별 의원 발의]

의안번호 2639

발의일자 : 2024. 11. 12.

발 의 자 : 엄샛별 의원

찬 성 자 : 고영찬 의원

1. 제안이유

출생축하금(첫째, 둘째아) 지원을 삭제하고 대상영유아 가정에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육으로 인한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, 대상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의 정의 신설(안 제2조).
- 나. 조문 내 띄어쓰기 수정 (안 제5조).
- 다. 출생축하금 중 첫째아, 둘째아 지원 규정 삭제(안 제6조).
- 라.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기준 등 신설(안 제6조의2).
- 마. 환수조치에 금천아이성장지원금 내용 신설(안 제8조).
- 바. 별지 제1호 서식 중 출산을 출생으로 수정(안 별지 제1호).

사. 별지 제2호 서식 성장지원금 신청서 신설(안 별지 제2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4호,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기 타

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
3) 입법예고 : 2024. 11. 15. ~ 11. 21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"금천아이성장지원금"이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"금천구(이하"구""를 "금천구(이하 "구""로 한다.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 각호에 따라 예산"을 "예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별지 서식"을 "별지 제1호서식"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내용 및 절차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천아이성장지원금(이하 "성장지원금"이라 한다)을 지원할

수 있다.

- ②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부터 4세인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.
- ③ 지원대상자는 대상영유아의 연령이 도래한 날로부터 또는 신청일현재 구 거주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 기준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(이하 "동장"이라 한다)에게 별지제2호서식의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신청서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.
- ⑤ 제1항의 성장지원금은 금천G밸리사랑상품권(정책발행상품권)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중 "출생축하금"을 "출생축하금 및 성장지원금"으로, "그"를 "지체없이 그"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홍보물 및홍보물품"을 "홍보물 및 홍보물품"으로 한다.

별지 서식을 별지로 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			출성	냉축Ŏ	카금		신청서					
	성명						생년월일					
신청인	출생아동 의 관						전화번호	<u>5</u>				
	주소	:										
	관내기 ※ 1년 미만											
출생	성명					Ş	생년월일					
아동	성별		남[], 여[]		출생순위	셋째[],	넷째	이상[]
급여	은행당	경					예금주					
계좌	계좌번	호										
	² 출생축하금 제공에 동의합			로서 개인정!	보보호밥	법 제1	5조 및 제17조	규정에 의	거하여	계 본인의		보의
수집	목적				수집	항목					보유	
		11415	1.61	W. J. O. O	-1-1111		1.11-11-		1		기간	
금천구 출생	축하금 지급			생년월일, 전 성별, 출생(소, 관내거주기긴 청계좌정보	t, 줄생아동 	등의	수집일	일로부터 3	3년 ——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금천구 출생축하금 신청이 불가합니다.

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

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.

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

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출생축하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금천구청장 귀하

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 신청서

	성	08			생 년 월	! 일		
신 청 인 (지원대상자)	연 르	† 처			대상영유(0 관계			
	주	소						
	성	명			생 년 월	! 일		
대 상 영 유 아	주	소						
		내거주 미만 시	기간 전입일 기입					
「서울특별시	금천구	출생	및 양육지	원 조례」제63	조의2에 따리	· 금천(아이성장	지원금을
위와 같이 신청	형합니다							
					년		월	일
			신	<u>l</u> 청인 :		(서	명 또는	인)
서울특별/	시 금천	선구청	장 귀하					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	- 금천 전산 - 지원 ② 수집·(- 대상 - 지원 ③ 개인정 ※ 동의 ▶ 위개 ▶ 부정:	아이성장: 망 내 주. 대상자 ^호 이용제공하 영유아 : 대상자 : 정보의 보험 정보의 제 정보의 제 건부 시 인정보 수집 수급으로 2	소 등의 개인경 학인을 위한 가 하려는 개인정 성명, 생년월 성명, 생년월 유 및 이용 기 공 기관 : 관기 금천아이성정 상이용 및 제3자 적발된 경우 서	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보의 항목 일, 주소(전입일자 일, 주소, 연락처 I간 : 제공 동의일	등의 개인정보 포함), 법정대리 로부터 1년 하실 수 없습니 (□ 동의, □ 등 통생 및 양육지원	확인 기인 다. 등의하지 않		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의 지원내용에 따라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는 연도 1월 1일 이후 대상 영유아부터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"금천아이성장지원금"이란
	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
	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
	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
	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
제5조(지원대상자) ① 출생축하금	제5조(지원대상자) ①
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	
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울	
특별시 <u>금천구(이하"구"라 한</u>	<u>금천구(이하"구"</u>
<u>다)</u> 에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	
같이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	
로 한다. 다만, 부모가 출생아동	
출생일 현재 구 거주일이 1년	
미만일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	
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	
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.	<u>.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지원기준 등) ① 구청장은	제6조(지원기준 등) ①
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	
에서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	

있다. <u>단</u>, 출생아동이 쌍생아 이 ---. <u><단서 삭제></u> <u>상일 경우 출생아동별로 태어난</u>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.

- 1. 첫째아 30만원
- 2. 둘째아 50만원
- 3. 4. (생략)
- ② 구청장은 <u>제1항 각호에 따라</u> <u>예산</u>의 범위내에서 출생축하용 품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출생축하금은 출생아동 출생 일, 또는 구 거주일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 민센터에 <u>별지 서식</u>의 출생축하 금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<신 설>

<삭 제>
<u><삭 제></u>
3.・4. (현행과 같음)
② 예산
③
별지 제1호서식
· 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2(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
원내용 및 절차) ① 구청장은
예산의 범위에서 금천아이성장
지원금(이하 "성장지원금"이라
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②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
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
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
2세부터 4세인 영유아의 보호자

제8조(환수조치) 구청장은 지원대 제8조(환수조치) -----상자가 허위 등으로 <u>출생축하금</u> 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비용이나 물품을 환| ---- <u>지체없이 그</u> ------수조치 하여야 한다.

로 한다.

- ③ 지원대상자는 대상영유아의 연령이 도래한 날로부터 또는 신청일 현재 구 거주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 기준 6개월 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(이하 "동장" 이라 한다)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신청서 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를 제출 하여야 한다.
- ④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구청 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성장지원금을 지급 한다.
- ⑤ 제1항의 성장지원금은 금천 G밸리사랑상품권(정책발행상품 권)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----- 출생축하금 및 성장지원금-----

제9조(교육 및 홍보) ① (생 략) 제9조(교육 및 홍보) ① (현행과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
 및 홍보를 위해 <u>홍보물 및홍보물</u>
 품 등을 제작・배포할 수 있다.

출산축하금 신청서

				LOM		
	성명			생년월	길	
신청인	출생이는 의 관		전화번호			
080	주소				70	
		내주기간 많시 ^{변입일}				
출생	성명			생년월일		
아동	성별	H	f 1. of 1	출생순위	셋제[]	, 넷제 이십(
급여	은행명	Ħ		예금주		
계좌	계좌번	호				
HEX.	집 이용되게 함		■ 거부한 정보가 힘습니 하지 않을	Er, 그러나 중요를 25	1 27 E07	출신 화선 신청이 활
부정수급으: 다.	그 의율원 경	. 서울특별시	(급천구 음 산축하)	급 지원 조취 제7조	에 따라 황수	하는 강에 돌의합니
[] 등의	B)	[] 등의	하지 않음			
855 10	별시 급천 배금을 신		7.3.2	에 관한 조례 월 일	제6조 규	구점에 의거

			신경	형인 :		(인)

같	음)					
2						
				홍보물	및	홍보
품						
		출생	축하근	- 신청시		
11=101	성명 출생아동과 의 관계			생년월: 전화번:		
신청인	주소 관내거주: *1년 미만 시 전	기간				
출생	★ 1년 미만 시 전 성명	입일 기업		생년월일		
아동	성별	망[]	. OE]	출생순위	셋MI], 넷째 이상[
급여	은행명			예금주		
		The state of the s	개인정보보호	번 제15조 및 제17조	규정에 의견	하여 본인의 개인정:
	제공에 동의합니다.	(월수)	41	(항목		보유
	역약 시표 성명	생년월일 성병	生物企利 7	로 주소 관내거주기: 디급신형제화정보		THEATH
[]동약 부정수급으 합니다.	현 【 로 적발된 경우 서울) 동 의하지 (특별시 급원국	행음 ² 출생 및 영화	: 그러나 불의를 <u>전문할</u> 육지원에 관한 조례	MORES CO.	STATE OF THE STATE
[] 동약	et [] 동의하지 (같음			

신청인 :

금천구청장 귀하

<신 설>

별지 제2호 서식(제6조의2 관련)

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 신청서

신 청 인 (지원대상자)	성 명	생 년 월 일
	연락처	대상영유아와의 관계
	주 소	7.7
대 삼염묘아	성 명	생년월일
	<u>주</u> 소	
	관내거주기간 ※6개월 미만 시 전입일 기업	

「서울특별시 급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 조례」제6조의2에 따라 급천이이성장지원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의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3. 1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44호, 2024. 1. 1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출생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9.7.19.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22.8.10., 2024.1.11.>

- 1. "보호자" 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,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출생축하금"이란 출생장려와 출생아동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19.7.19.]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출생 및 양육지원 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.〈개정 2024.1.11.〉
 [전문개정 2019.7.19.]
- 제4조(출생 및 양육지원사업) 구청장은 출생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(개정 2024.1.11.)
- 1.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
- 2.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
- 3. 출생장려를 위한 홍보
- 4. 그밖에 구청장이 저출생 대책 및 출생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[전문개정 2019.7.19.]

[제목개정 2024.1.11.]

- 제5조(지원대상자)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. 다만, 부모가 출생아동 출생일 현재 구 거주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. 〈개정 2022.8.10., 2024.1.11.〉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부모의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. 〈개정 2022.8.10.〉
- ③ 출생축하금 대상 출생아동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. 다만, 재혼 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하며, 주민등록 동거 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순서대상에 포함한다. <개정 2022.8.10., 2024.1.11.>
- ④ 해당 출생아동의 출생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

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22.8.10., 2024.1.11.>

[전문개정 2019.7.19.]

제6조(지원기준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출생아동이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아동별로 태어난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. 〈개정 2024.1.11.〉

- 1. 첫째아 30만원
- 2. 둘째아 50만원
- 3. 셋째아 70만원
- 4. 넷째아 이상 100만원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2.8.10., 2024.1.11.>
- ③ 출생축하금은 출생아동 출생일, 또는 구 거주일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별지 서식의 출생축하금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24.1.11.〉
- ④ 출생축하금 신청인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 중 1인으로 한다. 〈개정 2024.1.11.〉

[전문개정 2019.7.19.]

제7조(중복 지원 제한) 출생축하금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중복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.

[본조신설 2024.1.11.]

[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<2024.1.11.>]

제8조(환수조치)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비용이나 물품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.

[제7조에서 이동 <2024.1.11.>]

제9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출생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및홍보물품 등을 제작·배포할 수 있다. $[본조신설\ 2024.1.11.]$

제10조(출생·양육 지원 자문위원회) 출생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·양육 지원 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제안 및 발굴에 관한 사항
- 3.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4.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방안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구청장이 출생 및 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4.1.11.]

제11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,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- 1.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
- 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
- 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
- 나.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다.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

[본조신설 2024.1.11.]

제12조(위촉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4.1.11.]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제590호, 2009.8.18)

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684호, 2011.10.27)

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1046호, 2019.7.19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제1246호, 2022.08.10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제1444호, 2024.1.11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. 3. 1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생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 가정부터 소급 적용한다. 다만,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하다.

[별지 서식] 출산축하금 신청서

관계법령

영유아보육법

[시행 2024. 9. 20.] [법률 제20380호, 2024. 3. 19., 일부개정]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08. 12. 19., 2011. 6. 7., 2023. 8. 8.〉
 - 1. ~ 3. (생략)
 - 4. "보호자" 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- 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. 23.>
 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6. 7., 2011. 8. 4., 2020. 12. 29.>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5. 5. 18., 2020. 12. 29.〉
 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24. 2. 6.〉 [전문개정 2007. 10. 17.]